

# 반도평과 선수의 건강(치료약물사용허가)

우리는 강의를 통해

- 치료약물사용허가란 무엇이며 그것이 질병치료에 필요한 약물사용을 어떻게 허가하여 건강을 보호할수 있게 하는가
- 치료약물사용허가신청은 어떤 과정을 거치며 어느 조직에 신청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배우게 된다.

# 제 1 과

## 이 강의에서 무엇을 배우게 되는가

### 이 강의를 받은 다음 우리는

- 치료약물사용허가를 신청하려는 합당한 리유를 밝힐 수 있어야 한다.
- 국내 및 국제급에서 해당 반도핑조직으로부터 치료약물사용허가를 받기 위한 공정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치료약물사용허가를 받기 위한 기준을 알고 있어야 한다.
- 필요한 경우 치료약물사용허가결정에 대해 상소하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의 목적은 선수가 필요한 경우 치료약물사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도록 하며 치료약물사용허가가 선수에게 어떻게 필요한 의학적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가를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 제 2 과

### 질병과 치료약물사용허가

#### 치료약물사용허가란 무엇인가?

우리는 체육에서 일정한 물질과 방법들이 금지된다는것과 금지목록에서 이러한 물질과 방법들을 찾을수 있다는것을 알고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금지물질이 들어있는 약물이나 금지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질병이 있을 때
- 위급한 상황이거나 질병치료를 위해 구급치료가 요구될 때

치료약물사용허가는 깨끗한 체육을 위한 모든 선수들의 권리와 보호하는 방향에서 질병이 있는 선수들이 계속 경기에 참가하도록 허가해주는것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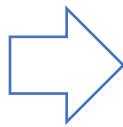
#### 누가 치료약물사용허가를 승인하는가?

국제련맹들과  
민족반도핑조직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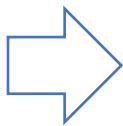
국제련맹과 민족반도핑조직들과 같은 규약서명국들은 합당한 치료약물사용허가신청과정을 세워야 한다.

치료약물사용허가  
위원회  
(TUE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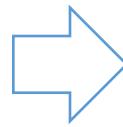
국제련맹이나 민족반도평조  
직들은 치료약물사용허가신청  
서를 검토할 책임을 지닌 의사  
들로 치료약물사용허가위원회  
를 조직한다. 치료약물사용허  
가위원회는 치료약물사용허가  
신청서를 승인 및 부결하는  
데 대한 결정을 내린다.

주요경기대회조직  
위원회(MEOs)



주요경기대회조직위원회도  
자기의 경기들에 한한 치료약  
물사용허가를 승인하거나 부결  
할수 있다. 그러나 주요경기대  
회조직위원회가 내린 결정은  
그 경기대회에서만 유효하다.

치료약물사용허가인정



규약에서는 치료약물사용허  
가인정을 허용하였다. 이것은  
어느한 반도평조직이 다른 반  
도평조직에서 승인한 치료약  
물사용허가를 받아들일수 있  
다는것을 의미한다. 그레므로  
같은 질병에 해당한 약물이나  
치료에 대해 2 번 신청하지 말  
아야 한다. 모든 반도평조직들  
이 다른 반도평조직에서 승인  
한 치료약물사용허가를 다 인  
정하지 않으므로 웨브싸이트  
에서 검색하거나 해당 반도평  
조직에 문의하여 현재 있는  
치료약물사용허가를 접수하는  
가 아니면 선수가 새롭게 신  
청해야 하는가를 확인해야 한  
다.

## 선수가 치료약물사용허가를 신청해야 하는지 어떻게 알수 있는가?

만일 질병이 있어 약물을 써야 한다면 먼저 금지물질이 함유된 약물인가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자면 약물치료전에 의사와 함께 금지목록에서 그 약물을 찾아보아야 한다.

\* 목록검색방법은 금지목록에 대한 강의안에서 찾아볼수 있다.

약물에 금지물질이 없거나 치료방법이 금지된 방법이 아니라면 치료약물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약물을 사용하거나 치료를 받을수 있다.

약물에 금지물질이 들어있거나 금지된 치료방법이라면 치료약물사용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 어느 조직에 치료약물사용허가를 신청해야 하는가?

국제련맹에서  
정의한대로  
국제급선수라면

국내급선수라면

올림픽경기대회나 장  
애자올림픽경기대회와  
같은 주요경기대회에  
참가하게 된다면

자기가 속한  
국제련맹에 신청해야  
한다.

민족반도횡조직에  
신청해야 한다.

주요경기대회조직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 제 3 과

# 치료약물사용허가신청과정

치료약물사용허가신청방법에는 두가지가 있다.

- 사전에 신청하는 방법
- 소급적으로 신청하는 방법

치료약물사용허가가 필요한 경우 일반적인 규정에 따르면 항상 가능한껏 즉시 치료약물사용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소급적인 치료약물사용허가는 예외적인 경우들이며 특수한 환경에서만 신청할수 있다.

### 사전에 치료약물사용허가를 신청하는 방법

금지된 물질이나 방법 사용을 요구하는 질병이 있는 선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가 있어야 한다.

약물을 사용하기 전에 민족반도평조직이나 국제련맹에 치료약물 사용허가신청을 해야 한다.

치료약물 사용허가위원회(TUEC)는 치료약물 사용허가신청서를 검토한다.

국제련맹이나 민족반도평조직은 선수에게 21일내로 결정을 통지한다.

국제련맹이나 민족반도평조직은 반도평행정 관리체계에 치료약물사용허가결정을 기록한다.

선수는 약물을 사용하기 전에 민족반도핑조직이나 국제련맹에 치료약물사용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 사전에 치료약물사용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치료약물사용허가신청서양식을 준비하여야 한다. 신청서양식은 반도핑조직의 웨브싸이트에서 얻을 수 있다.
- 의사와 함께 선수는 치료약물사용허가 신청서양식에 내용을 기입하고 필요한 의학적증거자료들도 첨부하여야 한다.
- 양식이 완성되면 해당 반도핑조직에 제출한다.

경기시에 금지된 물질에 한해서는 그것이 위급한 상태가 아니거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다음경기에 참가하기 30일전에 신청해야 한다.

명심해야 할것은 선수들의 건강이 항상 첫째라는것이다. 약물사용을 시작한 후 소급적인 치료약물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

### 치료약물사용허가를 신청할 때 어떤것들이 있어야 하는가?

치료약물사용허가를 신청하려면 신청서양식을 완성해야 하며 필요한 많은 의학적자료들이 있어야 한다.

#### 선수의 치료약물사용허가신청서에는

- 명백히 확정된 진단서가 있어야 한다.
- 그 진단서(실험실자료, 화상자료 등)를 립증할 적합한 의학적문서가 포함되어여야 한다.
- 사용량, 적용경로와 치료기간을 밝혀야 한다.
- 해당한 반도핑조직에 보내거나 반도핑행정관리체계(국내급 혹은

국제급 선수인 경우 세계반도핑기구의 국제자료기지체계)에 직접 입력해야 한다.

치료약물 사용 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때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중요하다.

- 선수의 의학적 문건은 의학적 자료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의학적 지식을 가진 의사나 기타 치료자격을 가진 성원이 준비해야 한다.
- 치료약물 사용 허가 신청서는 실례로 당뇨병 진단에 대한 것이라면 당뇨병 치료 전문가가 신청서를 준비해야 한다.
- 혹은 신청서가 주의 부족 활동 항진증과 관련한 것이라면 리상적으로는 신경과 의사나 기타 주의 부족 활동 항진증 치료 전문 의사의 진단 학적 검사 결과를 포함한 의학적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치료약물사용허가를 신청하면 치료약물사용허가위원회가 검토한다.

치료약물사용허가위원회는 4 가지기준에 따라 치료약물사용허가신청서를 평가한다.

#### 기준1

- 진단받은 질병치료에 필요한 것이다.

#### 기준2

- 치료가 선수의 경기능력을 향상시키지 않는다.

#### 기준3

- 금지물질이나 방법을 사용하는 것 외에 합당한 치료방법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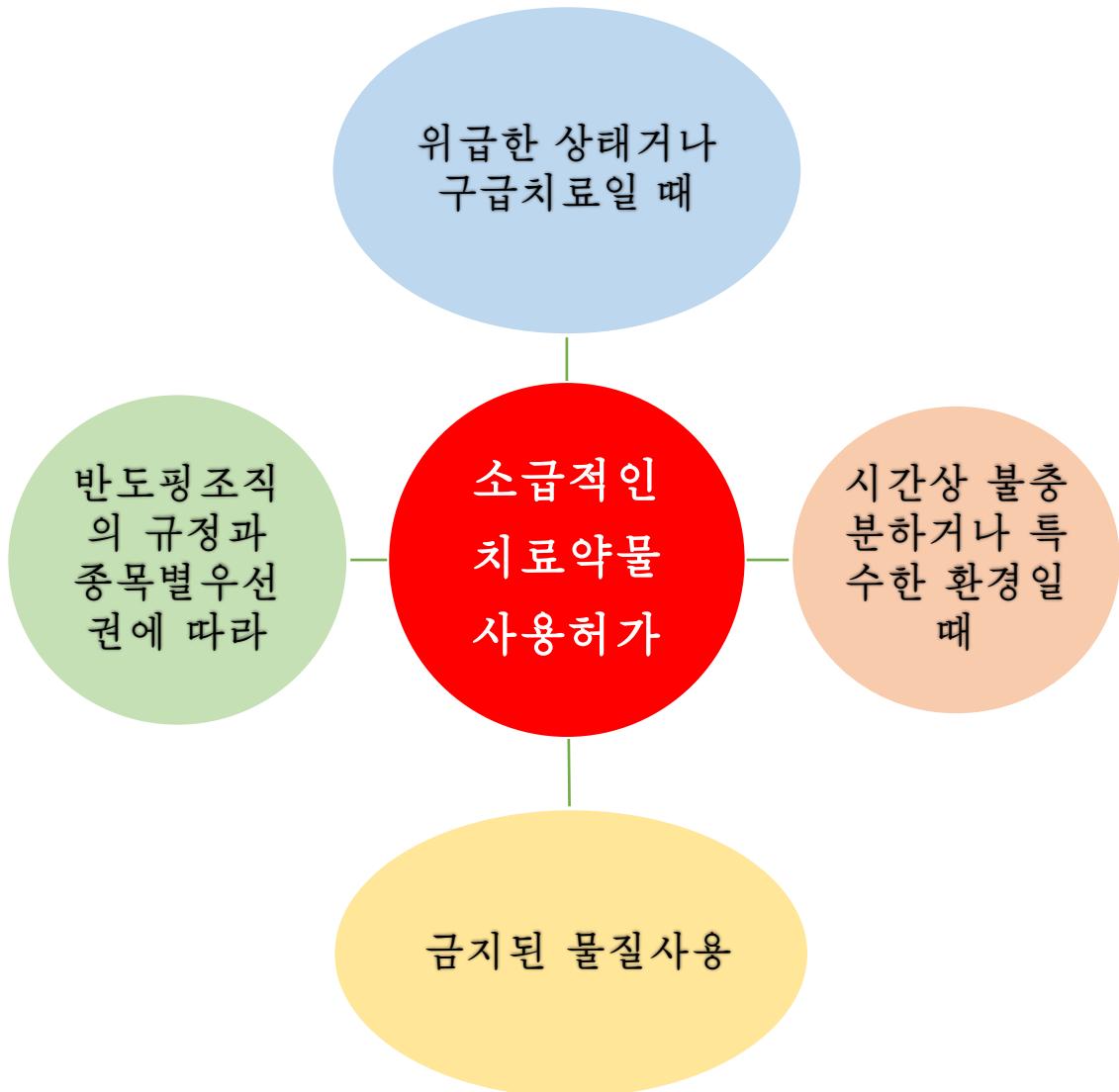
#### 기준4

- 물질이나 방법의 사용이 이전에 타당한 치료약물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했던 물질이나 방법과 관계가 없다.

## 소급적인 치료약물사용허가신청방법

일부 부류의 선수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특수한 환경에서 치료약물사용허가는 선수들이 치료를 시작한 후 또는 검사를 받은 후 신청할 수 있다.

선수는 다음의 경우들에 소급적인 치료약물사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 위급한 상태거나 구급치료일 때

선수가 질병치료를 위해 갑자기 구급치료를 받게 되였고 금지물질이 들어있는 약물을 써야 할 때이다.

### 반도핑 규정과 종목별 우선권에 따라

자기가 속한 민족반도핑조직이나 국제련맹의 반도핑규정 또는 종목별 우선권에 따라 선수가 참가하는 종목이나 경기의 급수로 하여 소급적인 치료약물사용허가를 신청하도록 하였을 때이다.

### 시간상 불충분하거나 특수한 환경일 때

검사를 받기 전에 치료약물사용허가를 신청할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없거나 신청할수 없는 특수한 조건이 있을 때이다.

### 금지된 물질을 사용했을 때

경기시에만 금지된 물질이 포함된 약물을 경기외에 사용한 후 양성으로 판명되였을 때이다.

우의 조건들 가운데서 한가지라도 부합되는 경우 선수는 소급적인 치료약물 사용허가신청을 할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선수의 치료약물사용허가가 자동적으로 승인된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선수의 치료약물사용허가가 치료약물사용허가위원회에 의해 승인되자면 여전히 4 가지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례외적인 환경에서 선수가 치료약물사용허가를 받지 못하는것이 불공평하다면 소급적인 치료약물사용허가를 신청하여 승인받을수 있다. 이런 경우에 치료약물사용허가기준 4 가지에 부합될 필요가 없다. 명심할것은 이것은 예외적인 경우이며 모든 경우들이 건당 평가되게 된다는것이다.

## 중요한것은

- 선수의 치료약물사용허가가 승인되었다면(사전이든 소급적이든) 선수는 치료약물사용허가확인서를 받게 된다.
- 승인된 모든 치료약물사용허가는 해당 기간에만 유효하다. 선수의 치료약물사용허가확인서에는 만기날자가 있다. 이것은 이 날자가 지나면 치료약물사용허가확인서가 더 이상 효력이 없으며 선수는 금지된 물질을 계속 사용하는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것을 의미한다.
- 선수의 치료약물사용허가가 만료된 후에도 선수가 금지물질이 함유된 약물을 계속 사용해야 한다면 새로운 치료약물사용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 또한 선수가 해외에서 훈련이나 경기를 하면서 치료약물사용허가를 가지고 있다면 선수의 치료약물사용허가가 체류기간이나 경기기간에 유효한가를 확인해야 한다. 만일 만료되었다면 선수는 새로운 치료약물사용허가를 신청하기가 힘들수 있다.
- 그리고 명심할것은 만일 선수가 유효한 치료약물사용허가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를 받으면 반도핑규정위반으로 될 위험성이 있다는것이다.

일단 선수가 민족반도핑조직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민족반도핑조직의 치료약물사용허가위원회는 그것을 검토하고 4 가지 기준에 부합되는가를 고찰한다.

치료약물사용허가위원회는 치료약물사용허가를 승인 또는 부결하며 21 일내에 선수에게 알려주고 반도핑행정관리체계를 통해 그 결정을 보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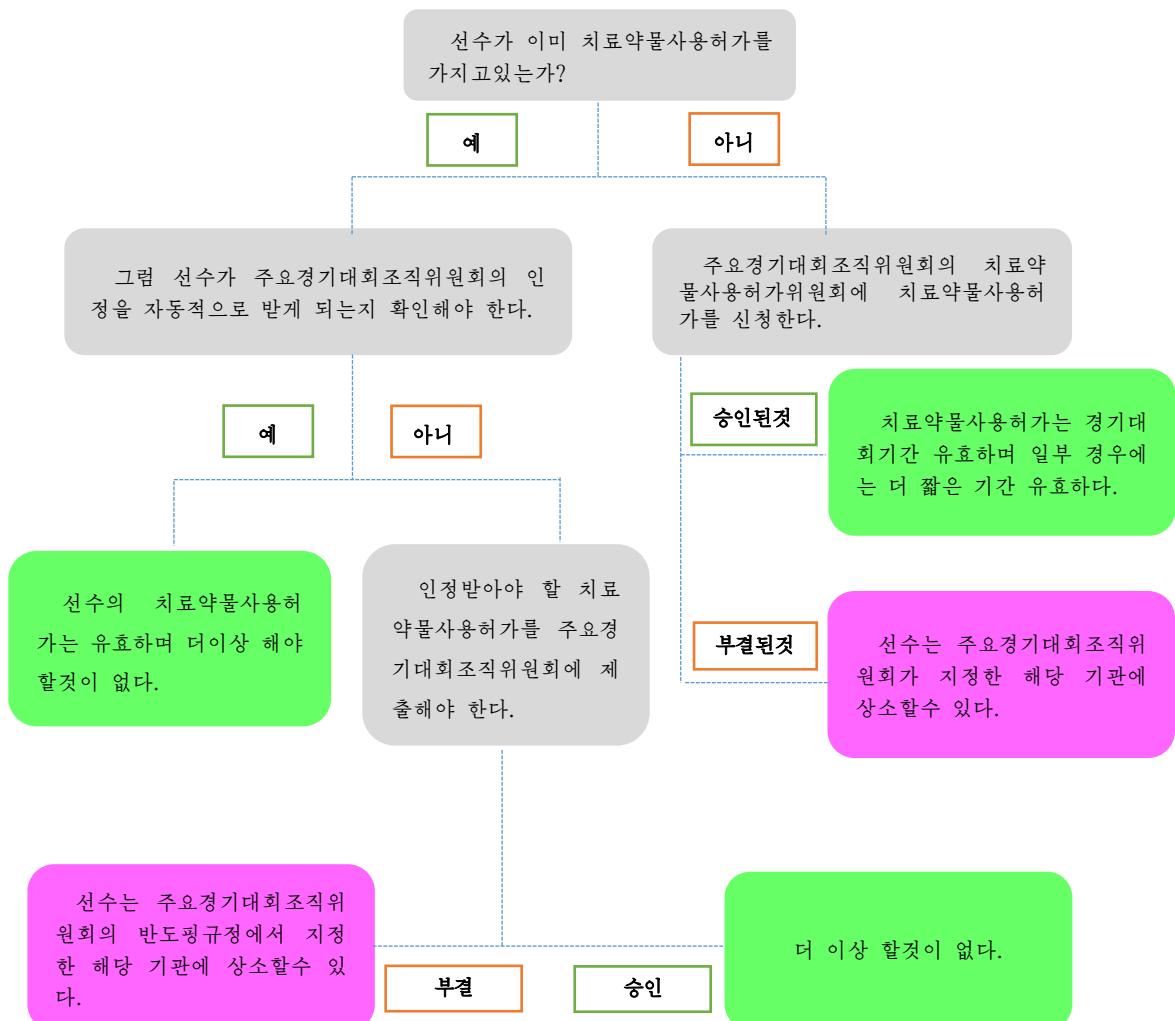
## 제 4 과

### 주요경기대회조직위원회의 치료약물사용허가

선수가 장애자올림픽경기대회나 올림픽경기대회와 같은 주요경기대회에 참가하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며 선수에게 치료약물사용허가가 필요한가?

주요경기대회조직위원회는 경기대회기간 치료약물사용허가과정을 감시한다.

만일 주요경기대회에 참가하거나 그 기간에 치료약물사용허가가 필요하다면 선수는 관련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



## 제 5 과

### 치료약물사용허가결정에 대하여 어떻게 상소해야 하는가?

선수의 치료약물사용허가가 부결되었다면 선수는 결정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거나 상소할 권리를 가진다.

상소기관은 치료약물사용허가신청을 어디에 제출하였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민족반도핑조직:** 국내급상소기관

**국제련맹:**

- 선수나 선수의 민족반도핑조직은 선수의 치료약물사용허가를 승인하지 않는 혹은 인정하지 않는 국제련맹의 결정을 세계반도핑기구가 검토해줄것을 요구할수 있다.
- 선수는 체육중재재판소(CAS)에 상소할수 있다.

**주요경기대회조직위원회:** 선수는 주요경기대회조직위원회 상소기관에 상소할수 있다.

## 강의를 마치면서

선수가 이 강의를 통해 알아야 할 중요한 문제는 무엇인가?

- 치료약물사용허가는 체육정신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기를 위한 모든 선수들의 권리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 약물치료를 받기 전에 선수는 금지목록과 대비하여 약물을 확인해야 한다.
- 선수가 의료성원에게 반도핑규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해야 한다.
- 치료약물사용허가를 신청하려면 어느 조직에 신청해야 하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 치료약물사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4 가지 기준에 맞아야 한다.
- 선수는 치료약물사용허가확인서 사본을 웃/기재주머니에 넣어 보관하며 치료약물사용허가확인서에 만기 날자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모르고 사용하다가 반도핑규정 위반 행위로 처리되지 않게 하며 필요에 따라 새로 치료약물사용허가를 신청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